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1,200,000	9,036,000
일반회계	261,028,000	7,830,840
특별회계	40,172,000	1,205,160
기타특별회계	40,172,000	1,205,1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114,326	213,430
수질개선특별회계	28,492,721	854,78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0,899	20,42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46,795	19,40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59,418	31,78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154,230	34,627
치수사업특별회계	878,811	26,364
기반시설특별회계	144,800	4,34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804,05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